##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05 발의연월일: 2025. 1. 22.

발 의 자: 김주영・박 정・허성무

정태호 · 진성준 · 이개호

김태선 · 이학영 · 박홍배

이용우 · 김태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이에 국세청의 소득자료의 연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 총액신고를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게 되어 있는 「전자정부법」에도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소득자료를 신고받지 않고 국세청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보험료를 정 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

따라서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제16조의10).

법률 제 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0제1항 후단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16 4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 로 본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①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	
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	
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	
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	
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	
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	
우는 <u>제외한다</u> .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
	<u>164</u> 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지
	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
	<u>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u>
	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
	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